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1.

발 의 자 : 윤재옥 · 서천호 · 김기웅
임종득 · 우재준 · 백종현
엄태영 · 이인선 · 이주영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하철을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.

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.

이에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,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

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 신설).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운임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) ① 철도사업자는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의 수납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도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철도공사가 철도사업자로 설정되어 있는 철도의 경우 그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

를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3(운임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) ① 철도사업자는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의 수납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도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</u>

한다)에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철도공사가 철도사업자로
설정되어 있는 철도의 경우 그
운임·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
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
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
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
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
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
따라 징수할 수 있다.